



양계안정법

최근 대한양계협회(이하 대양협이라 칭함)를 중심으로 양계안정관리법 혹은 양계안정법(이하 안정법이라 칭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계란보다 육계의 시장기능에 문제점이 나타날 때마다 일부층에서 간혹 거론되었었고, 올해의 장기적이고도 깊은 불황을 겪으면서 육계의 계열화 생산조직(Integration system-이하 I. S.라 칭한다)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주장되면서, 이와 병행하여 주로 학자층에 의하여 양계안정법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대양협에서는 이미 몇차례의 소규모 각종 회의에서 의사타진을 시도했고, 이사회는 논의의 거쳐 안정법의 초안까지 작성해 놓고 있다. 대양협에서 작성한 양계안정관리법(안)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생산조절과 양계안정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생산조절사항은 종계업의 등록 및 부화업의 허가라는 기존제도에 양계업의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주된 골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필자를 포함한 모든 양계산업관계인들의 욕심이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양계안정법이 한 나라의 법(法)으로서 존재가치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문제를 떠나서, 양계산업안정을 위한 법이 제정된다면 생산조절과 안정기금사항 이외에는 손댈만한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으므로 대양협에서 작성한 법의 초안에 위의 두가지사항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일단 올바른 문제를 다루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法(案)의 내용중 생산조절사항의 가장 핵심은 양계업의 신고제이며 나머지 항목은 둘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주로 학자층에 의해 발상되었고, 주도되고 있으며, 설득되어지고 있는 생산조절사항은 양계업 영위를 신고제나 등록제 혹은 허가제로 하여 생산자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의 양계산물 총수요량에 맞춰 생산량을 적절히 조절하므로써 양계산업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양계업이 신고제가 되건 허가제가 되건, 생산량을 제한된 생산자에게 할당하는 쿼터제(분배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경기도 양주군에서는 지정된 몇명의 양계인들이 모두 몇수의 닭만 사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A는 몇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신 정 일

(유일농원 영업부장)

B는 몇수등으로 한정되며 증감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조절하는 기관 혹은 단체의 지시에 의해 양계수수를 늘이거나 줄여야 하며 이렇게 하므로써 전체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호주의 에그보드(Egg Board—계란생산자조합)에서 나왔고, 외국방문이 잦은 학자들의 눈에 안정된 그러한 제도가 좋게 비쳤던 것이다.

양계안정법(안)중 첫번째 사항인 생산조절을 위한 제한제도에 대하여 필자는 우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 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원칙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경제활동은 자유경쟁상태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이미 원시적이거나 후진적인 상태를 지나서 선진의 길을 향하여 질적·양적으로 급격한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목표는 겨우 개발도상국은 벗어나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경제부국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양계산업도 대한민국이란 총경제中の 일부분이다. 조그만 목표의 달성은 어떤 규제나 제도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대성(大成)은 오직 건전한 자유경쟁속에서 정도(正道)를 걷는 길 밖에는 없다. 왜 자유경제체제라는 時代의 큰흐름을 역행하려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목표는 확대재생산과 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제인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우리 양계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좀 더 높은 소득을 올려 계사를 한 동 더 지을 것이며, 양계장 부지를 더 구입하려고 최선을 다 한다. 그러나 쿼터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욕망이 일단 원천적으로 꺾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만약 쿼터제가 실시된다면 생산자(업자—업체)의 머리는 생산방면의 예리함에서 비생산적인 어리석음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자유경쟁상태하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원가를 낮추며,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하는 두뇌가 어떻게 하면 쿼터량을 좀 더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하는 비생산적인 두뇌로 변하며, 노력으로 얻으려는 자세가 부정으로 소득을 올리려는 정신으로 변해버린다. 이는 바로 양계산업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된다.



둘째,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양계산업에 대한 생산조절로서 쿼터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종종 호주나 이스라엘 혹은 미국의 예를 든다. 쿼터제가 가장 잘 실시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호주인데 호주와 우리나라의 여건을 동일시하려는 생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호주의 인구는 겨우 1,500만정도이고, 그들의 생활관습이나 사회제도가 우리의 현실과는 판이하다. 안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급팽창하고 있는 약 4,000만의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특히 양계인의 대다수가 남의 땅을 도지내고, 그 위에 비닐 하우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언제 어디로 이사가게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업계현실에서 어떻게 호주와 같은 제도가 가능하단 말인가? 호주도 쿼터제는 계란에만 실시되고 있으며 육계의 경우는 법적제도가 아니고 경제체제인 I. S. (계열화 조직) 체제로서 생산유통되고 있을 따름이다. 작년 8월에 내한한 호주의 쉘든(B. L. Sheldon)박사에 의하면 쿼터제의 부작용으로 마리당 5\$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경영권이 매매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호주나 이스라엘의 사정에 통달치 못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시 인구 약400~500만 정도로 특수환경속에 놓여 있다.

셋째, 통계자료 및 조직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농업관계 통계는 사실 억망이다. 국민들의 수요측정 — 이것 또한 애매한 사항이다. 아직 비축제도가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절별로 수요기폭이 심한 수요량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 생산량을 전국의 생산자에게 어떻게 그 양을 할당할 것이며, 그 할당된 양이 과연 그대로 생산자들에 의하여 지켜질 것인가? 우리는 부화업과 종계업에 대한 규제조치를 제정할 때도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오늘날 그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속하게 된 자승자박의 완전한 실패작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부화업이나 종계업의 규제조치도 실패하였거늘 과연 어떻게 양계업의 규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떤 법을 제정할 때,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에 기준을 두고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화업과 종계업의 허가 및 등록제를 만들 때도 그 목적은 생산조절과 양계산업발전에 그 뜻을 두었었다. 그러나 사실

상 그 때 대부분의 부화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부화업에 참가치 못하게 하므로서 나만이 높은 소득을 얻자는 불순한 동기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 쿼터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중에 생산자가 있어서 그 사람의 뜻이 위와 같은 불순한 동기에 있다면 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또한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필자도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업자가 이 제도를 주장하는 것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법으로 우리를 제한 하자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인가? 항상 이상을 추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의 가능성과 경제의 흐름에 혹시 잘 못 생각이 미칠 때 이를 주장하는 예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업자의 주장은 매우 모순된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다.

네째, 법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도 이것은 분명히 악법일 가능성이 많다. 필자는 法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법은 적극적(생산적)인 법과 소극적(소모성)법으로 나뉠 수 있다. 생산적인 법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목적법이고, 소모성법은 어떤 일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법이다. 法이란 원래 자연상태에서의 존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시하는 최소한의 규제조치이다. 우리가 생산조절을 위한 쿼터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정부에서 관권으로 규제해 주십시오-하는 무능력의 표시밖에 안된다.

대양협회의 한 간부가 정부의 法제정관계관에게 양계업 허가제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결과 그 관계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비웃음뿐이었다.

“좋죠. 농사도 허가제, 먹는 것도 허가제, 밥상에 콩나물 반찬 오르는 것까지도 허가제……도 허가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해 보시오.”

질문한 대양협회의 간부는 얼굴을 붉히며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양계업 허가제는 말도 안되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수요폭발에 대한 생산조절조치의 적절한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거나 기타 다른 여러가지 요인으로 공급의 부족량이 심각할 때 당국은 양계산물의 수입을 추진할 것이고 이의 영향은 업계에 바로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항이다. 이려할 수 있는 가

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이것은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망치는 결과가 된다.

양계안정관리법(안)의 두번째 사항은 양계안정기금문제이다. 이 문제는 매우 유익하고 발전적이며 소망스러운 사항이다.

우리가 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해야할 일이 있고 당국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다. 우리 양계인 스스로가 해야할 일은 매우 많다. 통계 자료조사업무, 질병대책, 소비촉진, 홍보사업, 유통개선, 등 매우 시급한 일들이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자금의 재원을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지만 안정기금법은 이러한 자금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겠다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법(안)이다. 양계안정기금 법(안)은 기금을 모우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료에 붙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79년을 기준으로 연간 사료 총생산량이 약 400만톤이고 양계사료가 이 중에서 약 200만톤이라면 사료 kg당 1원의 기금을 모을 때 연간 약 20억원이라는 기금이 형성되게 된다. 연간 20억원정도라면 산적해 있는 우리 업계의 문제들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되며, 이 기금은 사료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된다.

아직까지 양계산업뿐 아니라 他産業에서도 대부분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치밀하고 정확한 정신자세가 아니라 항상 어물쩍 넘겨버리는 습성이 우리 국민성에 배어 있어 왔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제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한다. 업무를 진정할 자세로 정확히 처리하자면 단지 관리능력이나 정신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필요한 물질적인 뒷바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유일한 생산자단체인 대한양계협회는 항상 자금을 쪼들리고 있으며 조그만 일을 하려해도 업자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손을 벌려야 했다. 이제 정상적인 업계발전을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물질적 힘이 필요하다. 양계안정기금법(안)은 남에게 의존하자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힘을 요청하자는 것도 아니다. 양계인 스스로가 본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양계인 스스로의 일을 하겠다는 자조(自助)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이 법의 제정에 있어서 당국에서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손뼉치며 격려해 줘야할 일이다.

사료 kg當 1원의 기금이 부쳐질 때 산란계 1,000首 규모의 양계인은 연간 대체적으로 36만원(1일 1,000원꼴) 정도 투자되며, 육용계 10,000首 규모의 양계인은 연간 약 20만원의 기금을 내게 된다. 산란계 3만수 규모의 양계인은 연간 약 100만원 정도의 기금을 내야 하며, 이상과 같은 규모의 금액은 생각에 따라 많을 수도 혹은 적을 수도 있다.

어떠한 법이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규제조치일진대는 사전 충분한 토의와 한치의 틀림도 없을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몇 사람의 일시적이고 독단적인 감정과 식자연하는 자세로 법이 만들어 저서는 안된다. 필자의 생각에 양계안정법(안)중 생산조절사항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고, 양계 안정기금사항은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개진의 태도는 가능한대로 개인적인 입장이나 이해득실을 따라서 순수한 업계의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 싶을 따름이다.

양계안정기금법(안)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산란계 3만수 규모의 양계인이 연간 100만원의 금액을 내놓으려고 할 때 선뜻 찬동의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양계안정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였지만, 우리 나라 전체 양계인에 비하면 아직 극소수의 인사들에 한하여 국한된 토의가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듣지도 못한 생산자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양계안정관리법(안)에 대하여 두서없이 의견을 피력 하였지만 필자의 최종적인 결론은 안정법(안)중에서 생산조절사항은 삭제하고 기금사항만을 다루는 양계안정기금법(안)이라는 명칭으로 단독법(안)을 추진 제정토록 함이 가장 소망스럽다고 생각한다.